

##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0일
교육기관	명칭		
	주소	전화번호	
교육과정명			
피육생의 정원			
교육기간			
현장확인 검사희망일			

「항공안전법」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교육계획서	수수료
		없음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